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금지 등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7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금지 등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금지 등(안 제37조의2 등)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하되,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의 제한) ①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학생의 등교일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이 학교에서 자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정당 홍보활동”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61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 제한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한 자 2.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정당 홍보활동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¹⁾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인하되었고, 202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²⁾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각각 인하되었으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³⁾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인하되었음.

이에 따라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거권과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6세가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1)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시행 2020. 1. 14

2)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시행 2022. 1. 21

3)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시행 2022. 1. 21

정당 또한 16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 및 홍보를 위한 동기가 생겼고 16세 이상의 학생은 학생이자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가 가능해졌음.⁴⁾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제한 범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학교는 교육활동의 주된 장소이자 학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생과 당원인 학생이 동일공간에서 학습을 받는 상황에서 당원인 학생이 학교 내에서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와 외부의 정당인이 학교 내에서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 학습권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인 학생이나 외부의 정당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나, 학교 내에서의 정당활동은 학교에서의 질서 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에 따르면,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을 할 수 없음.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⁵⁾이 발표(2022. 1. 27.)된 바 있음.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의 홍보 활동 등에 대해 학교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학교에서의 정당 활동 제한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특히, 「대한민국헌법」⁶⁾과 「정당법」⁷⁾은 정당의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 인하 등의 입법조치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이 과열되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더라도 학교 관리자가 현수막 철거, 홍보물 회수 및 특정 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⁸⁾할 수 있으므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1월 27일)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 발표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158677>

6)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7)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8)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현실적인 다툼 소지를 없애고 관련 내용을 명료하게 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일부 제한할지 여부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개정안 제37조의2 제2항의 경우 정당의 홍보활동 금지장소를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제61조의2는 정당의 학교에서의 정당활동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이나 정당이 아닌 실제 행위자만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당법에 양벌규정 도입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이 선거운동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을 하려는 특정 정당 소속의 학생 또는 외부인과 학교측 사이에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